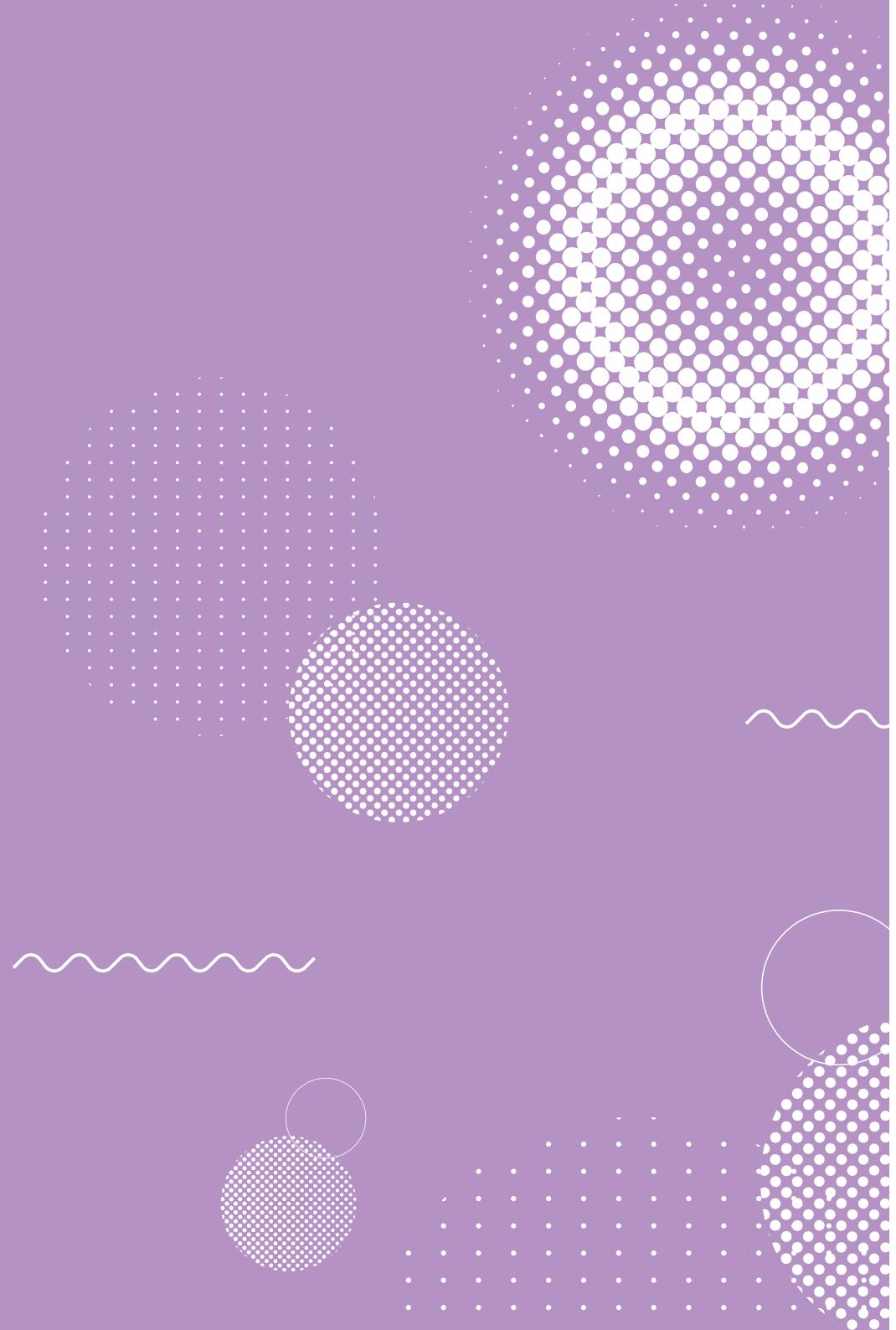


02. 공연예술



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

사업명	접수일정	문의처	페이지
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	공연장대관료지원 2022.4월/8월/11월	061-900-2197	278
	민간소공연장지원 2022. 2월	061-900-2256	
공연예술창작산실) 창작실험활동지원	2022. 4월	061-900-2227	284
공연예술창작산실) 창작오페라발굴지원	2022. 4월	061-900-2205	289
공연예술창작산실)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	2022. 4월	061-900-2196	293

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

2020년까지 별도로 운영된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과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사업은 2021년부터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에 통합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. 본 사업은 민간예술단체(인)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장대관료지원과, 민간 소공연장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소공연장지원 트랙으로 나누어 운영합니다. 사업대상에 따른 신청자격과 사업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목적

- (공연장대관료지원) 공연작품 제작비용 중 부담이 큰 대관료 비용을 지원하여 공연예술단체가 안정적으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여건 마련
- (민간소공연장지원)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초 공연예술(연극/뮤지컬·무용·음악·전통예술·다원예술) 극장을 지원하여 공연단체 및 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마련

2. 신청자격

- 공연장대관료지원
 - (신청자격) 국내 소재 등록공연장에서 지원대상기간(2021.12.1.~2022.11.30.) 중 기초공연예술 분야 공연을 종료한 민간 예술단체 및 예술인
 - (자격요건) 공연한 민간예술단체(개인)와 대관공연장의 대관계약이 확인되어야 하며,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소속직원(연출, 작가, 행정직원 등)이 대관계약 또는 대관료 납부를 한 경우, 소속직원이 단체 소속임이 공연 포스터, 프로그램북 등으로 증명되어야 함
- 민간소공연장지원
 - (신청자격) 민간 소공연장(객석 수 300석 미만)을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
 - (자격요건) 공모 마감일 이전 등록 완료한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에 한해 지원 가능

3. 사업내용

- 공연장대관료지원
 - (대상사업) 국내 예술단체(예술인)의 기초공연예술 분야(연극/뮤지컬·무용·음악·전통예술·다원예술) 대관 공연
 - (지원내용) 순수대관료(설치 및 리허설, 공연대관, 철수대관) 및 부대시설사용료 총액의 90%

○ 민간소공연장지원

- (대상사업) 기초 공연예술 전용 공간으로서 지원대상기간 중 기초 공연예술 분야(연극/뮤지컬·무용·음악·전통예술·다원예술)의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 전국의 민간 소공연장
- (지원내용) 공연장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및 운영 경비

※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

<공연장대관료지원>

- 공연작품에 기초공연예술 분야 외의 내용이 포함되거나,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연 (대중가수 콘서트, 토크콘서트, 인디밴드 공연, 마술쇼, 개그쇼 등)
-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 혹은 공연장을 임차하여 진행한 공연 (지원신청을 위하여 공고일 직전 혹은 공모 중에 임대계약서를 임의로 대관계약서로 변경하였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포함)
- 가족 혹은 단체의 실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을 대관하여 진행한 공연
-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
-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(월드투어)
-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타 기관(유관기관, 지역문화재단, 지자체 등)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공연

※ 동일 작품(공연)에 일부라도 지원받는 경우 모두 포함

※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(한국메세나협회 주관)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, 해당 펀드기금이 집행되는 공연

※ 2년 이상의 중장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예진흥기금을 장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의 공연
(예)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등

- 공연의 실체가 불분명한 공연(티켓오픈 및 판매내역/홍보자료 등이 없는 공연, 온라인 무관중 (비공개) 공연)
- 허위 대관계약, 대관료 부풀리기 등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신청을 한 공연
- 보조금 횡령, 성희롱·성폭력 등 예술현장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단체(개인)가 포함된 공연
- 지원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단체(개인)가 함께 참여한 공연

※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

<민간소공연장지원>

- 공연예술 분야 작품을 기획 및 대관하는 공연장이 아닌 경우
- 사업기간 내(2022년 12월 31일까지) 공연장을 지속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
- 신청단체가 복수의 공연장을 운영 중인 경우

※ 한 명의 대표자가 또는 소속 임직원을 통해 복수의 공연장을 운영 중인 경우 1개 공연장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

※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동일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

- 신청단체의 주목적이 공연예술 활동이 아니라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아닌 경우

※ 신청단체가 기업에서 공연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별도 설립한 문화재단일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

- 지원신청 작품이 타 지원사업(타 기관, 지역문화재단, 지자체 등)을 통해 이미 제작비를 지원 받은 경우
- 예술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타 공공지원 사업(지원기관, 지역문화재단, 지자체 등)을 통해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

○ 2022년 예산 : 25억원(공연장대관료지원 15억원, 민간소공연장지원 10억원)

4. 지원심의

○ 심의방법

- 서면심사

○ 심의기준

트랙	심의기준	세부 평가 내용
공연장 대관료 지원*	신청사업의 지원 적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기초 공연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작품인지 여부-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- 등록공연장에서 실제 공연이 진행되었는지 여부- 지원단체 및 신청사업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 (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및 지원 제외 대상사업, 결격 사업 여부 확인)
	대관료 집행 적정성 및 증빙자료의 객관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의 적정금액 지급여부 및 지원적합성 확인- 지원신청액의 적정성(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)- 필수 제출자료(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증빙자료) 제출 여부

* 공연장대관료지원은 별도의 지원심의 없이,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적격성 여부에 따라 지원결정
(네거티브 심사 방식)

트랙	심의기준(가중치)	세부 평가 내용
민간 소공연장 지원	계획의 실현 가능성 (4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? - 사업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(시설, 조직, 인력 등)을 갖추었는가? - 사업 운영을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계획을 갖고 있는가?
	기초 공연예술에 대한 기여도 (4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난 3년간 기초 공연예술 분야에 기여할만한 실적을 보유하였는가? - 사업 운영 방향과 계획이 기초공연예술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? -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활동 기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?
	공연장 운영의 지속가능성 (2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연장 운영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을 위한 계획이 있는가? - 공연 출연진, 스태프 및 관객을 위한 공연장 안전관리 계획이 충분한가? - 안전한 창작환경을 위한 상해보험,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계획이 있는가?

5.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

○ 신청방법
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(이메일, 우편, 직접 방문 접수 불가)

※ 신청시 유의사항
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,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,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.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,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'내 정보방'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(결과발표 시, 문자 안내 발송 예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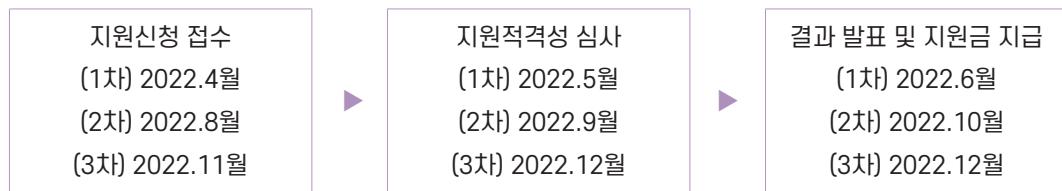
○ 제출자료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첨부파일로 제출

※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,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트랙	제출자료	구분
공연장 대관료 지원	1. 지원신청서(HWP 형식, 지정양식 사용, PDF 변환제출 금지) - 지원신청 공연에 대한 증빙자료(팸플릿, 현장사진 등) 필수 포함	
	2. 대관 계약 증빙서류 - 계약서, 대관승인공문, 대관확정서 중 택일 - 대관계약체결 이후 대관료 변경이 있을시, 대관료 변경에 대한 '최종 납입 금액 변동 확인서' 첨부	
	3. 대관료 납부 증빙서류 - 전자(세금)계산서+이체확인증, 대관료/지방세외수입 납부(내역) 확인서(공연장 직인 필수)+이체확인증, 현금영수증, 신용/ 체크카드 영수증(매출전표) 중 택일	필수
	4. 공연장등록증	
	5. 통장사본 - 신청단체(인) 또는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	
	6. 단체 증빙서류 -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법인등록증 중 택일	해당 시 필수
	1. 지원신청서(HWP 형식, 지정양식 사용, PDF 변환제출 금지)	
	2. 공연장등록증	
	3. (자가 공연장의 경우) 부등산 등기부등본 (임차 공연장의 경우) 임대차 계약서 ※ 임대차계약서 내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(사업기간)까지 포함 (단,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최근 3개월간 임차료 납부내역 추가제출필수)	필수
	4. 단체 증빙서류 -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법인등록증 중 택일	
민간 소공연장 지원	5. 최근 3년간 공연장 운영실적 증빙서류 - 공연 포스터·팸플릿, 언론보도자료 등	해당 시 제출

6.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

○ 공연장대관료지원



○ 민간소공연장지원



※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7. 문의처

○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

- (공연장대관료지원) 061-900-2197
- (민간소공연장지원) 061-900-2256

※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및 사업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변경된 내용은 해당사업의 공모 진행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별도공모]

(공연예술창작산실) 창작실험활동지원

※ 주요 참고사항

구분	세부내용
코로나19 대응 방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선정단체는 단체 구성원과 관객의 안전,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방침을 준수·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사업 변경은 지원신청서 상의 기준 목적과 선정취지에 부합해야 하며,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대체 가능, 사업취소는 단체의 판단에 따름· 사업이 변경, 취소된 경우 기 집행한 비용은 관련 증빙이 가능한 경우 보조금에서 정산 가능(단, 보조금 집행 기간은 사업종료일 까지)·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인건비 일부 항목 최대 30%까지 소급 편성 가능
예술인고용보험 ·상해보험 가입 의무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사업 참여자 전원 예술인고용보험·상해보험 필수 가입(보조금 내 편성 지원)
영유아 돌봄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 대상 영유아 돌봄비 지원(보조금 내 편성 지원)
중복지원 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(2022~2024)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불가
지원내용 개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(지원유형 일원화) 기초공연 예술장르 작품 창작 및 구현 전 단계 지원 ※ 기존의 공연 초기 구현 단계를 포함한 신작 사전 제작의 경우, 사전 제작활동지원 사업으로 지원· (정책지원)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'활동지원' 강화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지원을 위한 창작이 아닌 예술가(단체)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액(5백만원) 지원으로 전환

1. 사업목적

- 새롭고 실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작품 제작 준비 활동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기초 공연예술 분야의 지평 확대
- 결과 중심의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창작 과정 및 시도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창작 자체에 집중 가능한 환경 조성

2. 사업 추진 방침

- 기존의 기초 공연예술 장르의 결과중심적 사업 진행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,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의 참신하고 실험적인 공연(작품)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리서치 단계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단계별 창작지원을 표방하는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의 취지에 궁극적으로 부합하고자 함.

3. 신청자격

- 신청대상 : 창작실험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연예술 단체 및 예술인
○ 자격요건 : 최근 3년 이내(2019-2021) 신청 사업에 해당되는 기초 공연 예술 장르(연극, 무용, 전통예술, 음악, 창작뮤지컬)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연 창작활동에 대해 증빙(공연 프로그램, 언론기사 등)이 2편 이상 가능한 공연예술 단체 및 예술인(※ PPT 양식 제공)
※ 경력단절(임신, 육아, 병역 등)의 경우, 경력단절 기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창작활동에 대해 증빙

4. 사업내용

○ 지원대상(사업)

- 기초 공연 예술 장르(연극, 무용, 전통예술, 음악, 창작뮤지컬) 기반의 공연 기획단계 창작활동

※ 지원 제외 대상

① 공연화된 작품

※ 학내공연, 학내워크숍, tryout공연, 쇼케이스는 공연되지 않은 작품(단, 유료공연 제외)으로 간주

② 타 지원사업 선정작품 및 프로젝트

③ 원작(문학작품, 영상물 등)에 대한 저작권자(공동 저작권자 포함)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프로젝트

④ 심사위원회에서 공연된 것으로 간주하는 작품 및 프로젝트

⑤ [지원신청 공통 조건]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

○ 지원 상세 내용

- 공연예술의 실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(취재, 조사, 연구 등) 지원

※ 본 사업은 제작실현 전 단계의 실험적 과정지원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부담 적용 제외
- 창작활동 과정에 대한 전문가(협력PD) 피드백 제공

※ 본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는 창작실험과정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협력PD(퍼실리테이터)와의 정기 미팅 및 선정단체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필수 참여해야 함

○ 지원 규모

- 5백만원 정액 지원
-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

세목	항목	비고
일반 수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례비 (창작자, 출연자, 스텝 등) · 조사연구지원금 (연구자문비용, 간행물구입 등) · 홍보비 · 회계검사수수료 · 예술인고용보험료 · 영유아 돌봄비 	<p>※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인건비 일부 항목 소급 편성 가능 (단, 지원결정액의 최대 30%까지 인정)</p> <p>※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및 사업 참여자 예술인고용보험·상해보험 가입 필수</p>
임차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비, 물품 등의 임차비 · 연습실 대관료 	<p>※ 단체 대표 사례비 책정 가능 (단,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)</p>
공공요금 및 제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홍보 관련 우편요금 · 상해보험료 	

※ 상기 예산항목 외 신청사업 관련 예산 추가 편성 가능(단, 사업추진비,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)

※ 회계검사수수료 단가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

○ 2022년 사업예산 : 3억원

5. 지원심의

○ 심의방법

- 서류 심의 : 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 심의

※ 장르 통합심의 및 심의위원 다양화를 통해 새로운 창작시도에 대한 심의전문성 확보

○ 심의기준

심의기준(가중치)	세부평가내용
활동목표의 타당성 (3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청자(단체)의 기획의도는 명확한가? · 본 창작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현 가능한가?
활동계획의 충실성 (4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창작활동의 추진방법과 일정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? · 참여하는 인력은 활동계획을 실행하기에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? · 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가?

심의기준(가중치)	세부평가내용
창작활동의 파급효과 (3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향후 예정된 작품활동 계획은 본 창작활동과 구체적으로 연계되며 실현 가능한가? · 본 창작활동은 향후 신청자(단체)의 예술적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?

6.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

○ 신청방법
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(이메일, 우편, 직접 방문 접수 불가)

※ 신청시 유의사항
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,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,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.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,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'내 정보방'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(결과발표 시, 문자 안내 발송 예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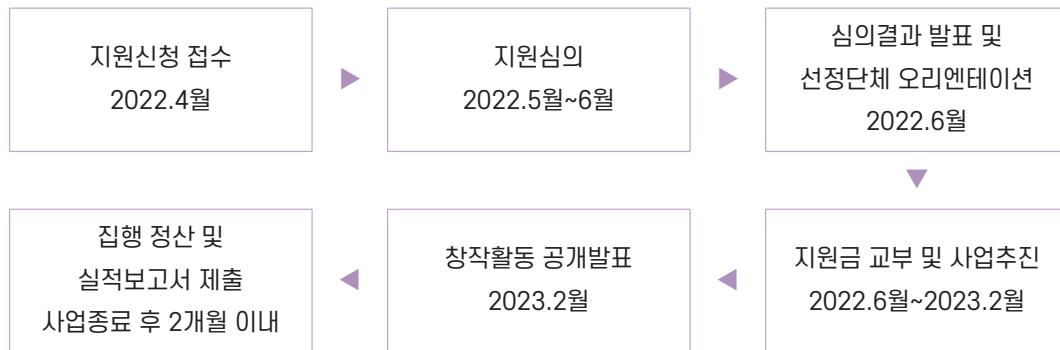
○ 제출자료

※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,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제출자료	구분	제출방법
1. 지원신청서(HWP 형식, 지정양식 사용, PDF 변환제출 금지) - 파일명 : 2022년도_창작실험활동지원(○○분야)_지원신청서_단체명	필수	
2. 활동증빙자료(PDF 형식, 지정양식 사용) - 최근 3년 이내(2019~2021) 신청 사업에 해당되는 기초 공연 예술 장르(연극, 무용, 전통예술, 음악, 뮤지컬)에서 공연예술 단체 및 예술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연 예술 창작 활동 2편 이상에 대한 증빙 자료(작품 포트폴리오, 공연프로그램, 언론기사 등) - 지정된 양식 외 접수 불가(PDF로 변환하여 제출 필수) - 신청자(단체) 본인이 참여했음이 바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제출 - 파일명 : 2022년도_창작실험활동지원(○○분야)_활동증빙자료_단체명 ※ 경력단절(임신, 육아, 병역 등)의 경우, 경력단절 기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창작활동에 대해 증빙	필수	국가문화 예술지원 시스템 (NCAS)

제출자료	구분	제출방법
3. 기타 지원신청 프로젝트를 참고할 만한 자료 - (저작권 관련 계약서) 원작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작품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- (음원, 영상) 활동증빙자료 내 링크삽입, 별도 첨부 시 파일당 100MB 이내 - (대본, 악보) 별도 파일로 첨부	선택	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

7.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



8. 문의처

○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061-900-2227

※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및 사업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변경된 내용은 해당사업의 공모 진행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(공연예술창작산실) 창작오페라발굴지원

※ 주요 안내사항

본 사업은 오페라 곡·대본 발굴을 위한 창작자 대상 2년간 연속 지원 사업으로, 본 사업 선정시 올해의신작(후보) 쇼케이스 심의에 자동 진출합니다.

※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개편(안)에 따라 2년차 쇼케이스 심의시 2022년도 올해의신작(후보) 신규 선정단체와 함께 2023년도 초에 쇼케이스 심의를 통하여 올해의신작 본 공연 대상자로 선정됩니다.

1. 사업목적

- 작곡가와 극작가의 창작오페라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창작활동 지원

2. 신청자격

- 신청대상 : 작곡가(1인) 및 극작가(1인)로 구성된 팀

- 자격요건

- 국내에서 진행되는 심의참여, 오페라단과 연계활동 등 전 일정에 참여 가능한 작곡가 및 극작가
- ※ 작곡가와 극작가 각 1인씩 매칭된 팀으로 지원신청/1인이 대표로 신청

※ 유의사항

- 올해의 신작 진출을 위한 신작(후보) 쇼케이스 심의는 2023년 상반기(장소 및 일정 추후 확정)에 추진 예정으로, 선정자(단체) 임의로 공연 일정과 장소를 선택할 수 없으며 협의를 통해 결정됨
- 쇼케이스 심의는 각 팀(작곡가+극작가)이 자체적으로 오페라단을 섭외하여 진행
- ※ 2022년 하반기 중 오페라단과 매칭 필수이며, 해당 오페라단은 쇼케이스 단계부터 참여

3. 사업내용

- 지원대상 사업

- 공연되지 않은 창작 작품으로 아래 조건 중 1가지 해당 시
 - 자율 주제에 따른 중·소극장용 오페라 대본 및 음악 창작품 개발
 - 기존 우수 원작 공연 콘텐츠를 활용하여 재창작된 오페라 대본 및 음악 작품 개발
- ※ 연극(희곡), 문학작품 등 타 분야에서 기존 작품성이 검증된 원작을 기반으로 하여 오페라로 재구성한 대본 및 음악

※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

① 공연화 된 작품

※ 학내공연, 학내워크숍, tryout공연, 쇼케이스는 공연되지 않은 작품(단, 유료공연 제외)으로 간주

② 타 지원사업 선정작품

※ 신청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국고보조금, 지자체보조금, 문예진흥기금, 민간지원금 등 중복

지원받는 사업

③ 원작(문학작품, 영상물 등)에 대한 저작권자(공동 저작권자 포함)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작품

○ 지원내용 및 규모

- 창작활동(연구, 조사 및 사전 제작 등) 지원비

※ 팀당 지원금 : 2천만원(작곡가 1천만원(1인)+극작가 1천만원(1인))

※ 본 사업은 창작활동에 대한 작곡가, 극작가의 개인 지원으로 자부담 적용제외 사업

○ 2022년 사업예산 : 1억원

4. 지원심의

○ 심의방법

- (1차) 서류심의 : 2022년도 지원신청서 및 역량 평가자료 검토

- (2차) PT 및 인터뷰심의 : 창작 구현에 대한 심층 인터뷰

※ 2차 심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 영상 인터뷰로 대체될 수 있음

○ 심의기준

심의기준	세부평가내용
신청자 예술적 역량 및 발전가능성 (3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작곡가 및 극작가는 충분한 예술적 창작역량을 갖추고 있는가?· 기존 활동에 비추어볼 때 오페라 창작으로 우수한 예술적 성취를 달성할 수 있는가?
작품의 예술적 발전가능성 (4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작품의 주제와 소재는 참신한가?· 창작의도가 시놉시스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?· 창작하고자 하는 작품이 타 작품과 차별화되는 요소는 있는가?
창작계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 (3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신청자의 연구 및 창작계획이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가?· 제시된 창작계획(추진일정)을 통해 사업 기간 내 우수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가?

5.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

○ 신청방법
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(이메일, 우편, 직접 방문 접수 불가)

※ 신청시 유의사항
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,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,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.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,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'내 정보방'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(결과발표 시, 문자 안내 발송 예정)

○ 제출자료

※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,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제출자료	구분	제출방법
1. 지원신청서(HWP 형식, 지정양식 사용, PDF 변환제출 금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파일명 : 2022년_창작오페라발굴지원신청서_신청자명 	필수	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(NCAS) 통해 제출

2. 역량평가 자료

작곡가	1) 창작곡 음원 파일(MP3 형식) 3곡 이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출파일명 : 이름_곡명.mp3 ※ 원곡에 대한 사용권이 확보된 음악선율을 인용할 경우, 별도 표기 필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오페라, 관현악곡, 성악곡, 뮤지컬 등 포함 2) 창작곡 악보 파일(PDF) 3곡 이내(동봉한 음원파일의 악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출파일명 : 이름_작품명.pdf - 악보에 단체나학교를 알 수 있거나 암시할 수 있는 표시는 삭제 - 악보 표지 또는 첫 페이지에 이름과 작품명 기입 - 전체 곡을 포함하는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	필수	웹하드에 업로드 제출
극작가	1) 최근 2년 이내 발표작품 2편 또는 최근 2년 이내 발표작품 1편+ 미발표 작품 1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작성 후, PDF 파일로 저장/온라인 제출 - 작품 개요서를 필히 포함하고 있어야 함 - 오페라, 뮤지컬, 희곡, (영화)시나리오 등 포함 - 미발표 작품의 경우, 일부 작품(완성작이 아닌)도 지원가능 - 제출파일명 : 이름_작품명.pdf 	필수	웹하드에 업로드 제출

6.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



- ※ 사업추진일정 및 쇼케이스 관련 사항은 내부사정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※ 1차년도 지원팀(작곡가, 극작가) 사업수행 및 매칭 오페라 단체 모두 쇼케이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

7. 문의처

○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061-900-2205

※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및 사업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변경된 내용은 해당사업의 공모 진행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최종
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(공연예술창작산실)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

※ 주요 안내사항

구분	세부내용
<해외진출지원> 유형 사업추진 불가 시 대안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코로나19로 해외진출이 어려울 경우 대안 트랙 마련 ①비대면(온라인) 공연콘텐츠 제작 및 배포 ②현지화 전략에 따른 공연 리메이킹 및 국내 쇼케이스 추진 ③신청단체가 제안한 자율적 대안 프로젝트
코로나19 대응 방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정단체는 단체 구성원과 관객의 안전,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방침을 준수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사업 변경은 지원신청서 상의 기준 목적과 선정취지에 부합해야 하며,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대체 가능, 사업취소는 단체의 판단에 따름 사업이 변경, 취소된 경우 기 집행한 비용은 관련 증빙이 가능한 경우 보조금에서 정산 가능(단, 보조금 집행 기간은 사업종료일 까지)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인건비 일부 항목 최대 30%까지 소급 편성 가능
예술인고용보험 ·상해보험 가입 의무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 참여자 전원 예술인고용보험·상해보험 필수 가입 (보조금 내 편성 지원)
영유아 돌봄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 대상 영유아 돌봄비 지원(보조금 내 편성 지원)
중복지원 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2022~2024)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 불가

1. 사업목적

- 해외 진출이 확정된 해외 협력 파트너와 공동제작, 초청공연, 라이선스 공연작품 지원과 동시에
 해외진출 준비과정 병행지원을 통해 진입장벽 해소 도모

2. 신청자격

- 신청대상 : 국내 창작뮤지컬 작품 중 해외공연,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공연단체, 제작사(법인)

○ 자격요건

- 공연원(라이선스)을 소지하고 있는 작품(단, 해외 저작권 혹은 해외 라이선스 작품 제외)
- 공연 전막이 발표되지 않았더라도, 쇼케이스 수준 이상 공연화가 진행된 작품

3. 사업내용

○ 지원대상 (사업)

구분	세부내용
창작뮤지컬 해외진출지원	<p>[기존 공연되었거나 제작중인 창작뮤지컬로 해외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에 초청을 받았거나 라이선스 수출 및 판권 판매에 따른 합작 공연, 공동제작 등을 추진 중인 작품 제작지원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지원대상 : 해외진출 공연(초청공연, 라이선스 수출, 합작공연 등)을 추진 중인 공연단체· 지원사항 : 공연 관련 사례비, 제작비, 임차료, 홍보비, 회계검증 수수료 등 <p>[코로나19로 해외진출 공연이 불가능할 경우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지원대상 : 해외진출 공연(초청공연, 라이선스 수출, 합작공연 등)을 추진 중인 공연단체· 지원사항 : ①비대면(온라인) 공연콘텐츠 제작 및 배포(단, 2개 국가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배포 필수) ②현지화 전략에 따른 공연 리메이킹 및 국내 쇼케이스(온/오프라인) 진행 ③사업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청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안한 대안 프로젝트

○ 지원내용

-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금액
 - 지원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자부담 의무 필수 이행
- ※ 자부담 : 총 소요액의 10% 이상 필수 책정

○ 지원규모 : 최대 1억 5천만원

-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

세목	항목	비고
일반수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사례비(창작자, 배우, 스텝 등)· 무대, 소품, 의상 제작비· 회계검사수수료· 홍보비· 예술인고용보험· 영유아돌봄비	※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인건비 일부 항목 소급 편성 가능 (단, 지원결정액의 최대 30%까지 인정)
임차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연습실 대관비· 극장 대관비· 조명, 무대, 악기, 장비 임차료	

세목	항목	비고
국외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외 항공권 · 숙박비 등 	※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및 사업 참여자 예술인고용보험 · 상해보험 가입 필수
공공요금 및 제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해보험료 · 홍보 관련 우편요금 	

※ 상기 예산항목 외 신청사업 관련 예산 추가 편성 가능(단, 사업추진비,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)

※ 회계검사수수료 단가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

○ 2022년 사업예산 : 2억 7천만원

4. 지원심의

○ 심의방법

- (1차) 서류심의 : 2022년도 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 심의
- (2차) 인터뷰 심의 : (대상자에 한해)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심층 인터뷰
※ 2차 심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 영상 인터뷰로 대체될 수 있음

○ 심의기준

심의기준(가중치)	세부평가내용
작품의 예술성 (3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작품의 예술적 수준이 우수한가? · 연출, 안무, 대본, 음악 등 창·제작 방향 의도는 독창적인가?
해외시장 경쟁력 및 해외진출 전략의 충실햄 (4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외 협력기관과의 협약/계약 내용은 구체적인가? · 해외 협력기관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만하며, 교류조건이 우수한가? · 공연단체(프로덕션)의 해외진출 마케팅, 관객유치, 제작계획은 구체적인가? [코로나19로 해외진출 공연이 불가능할 경우] · 현지 시장 개척에 적합한 전략 및 공연의 리메이킹 계획이 충실한가? · 해당 플랫폼이 확산 가능성을 갖추고 있으며, 활용 계획이 구체적인가? · 해당 프로젝트는 사업목적 구현에 적합하며, 실행계획이 구체적인가?
공연단체의 역량 (3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연단체(프로덕션)의 사업수행능력(실현성) 및 기획력은 우수한가? · 작품참여 제작진의 역량은 우수한가?

5.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

○ 신청방법
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(이메일, 우편, 직접 방문 접수 불가)

※ 신청시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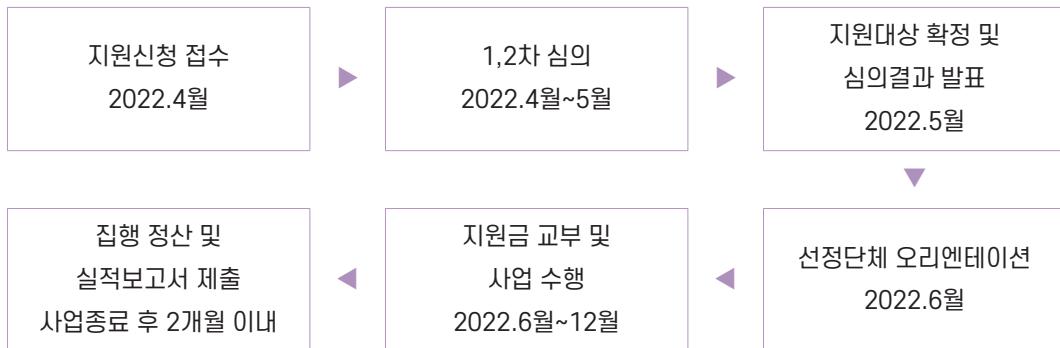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,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,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.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,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'내 정보방'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(결과발표 시, 문자 안내 발송 예정)

○ 제출자료

※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,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제출자료	구분	제출방법
1. 지원신청서(HWP 형식, 지정양식 사용, PDF 변환제출 금지) - 파일명 : 2022년_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지원신청서_신청자(단체)명	필수	
2. 대본파일(HWP 형식, 지정양식 사용, PDF 변환제출 금지) - 파일명 : 2022년_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대본_신청자(단체)명	필수	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(NCAS) 첨부파일 제출
3. 해외진출계획서(자유양식, A4 2장이내)	-	
4. 해외협력파트너 계약체결문서(협약서, 대관계약서 등) ※ 현지 언어 계약서의 경우 공증된 한글 번역본 필수 제출	필수	제출
5. 저작권 관련 계약서	선택	
6. 약보(A4 규격, PDF 파일로 제출) : 10곡 이내	필수	
7. 음원(mp3, wav 등 파일 제출) : 10곡 이내	필수	웹하드에 업로드 제출
8. 공연영상(mp4, avi 등 파일 제출) 10-20분 이내 하이라이트영상	필수	

6.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



7. 문의처

○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061-900-2196

※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및 사업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변경된 내용은 해당사업의 공모 진행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최종
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